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584
----------	-------

발의연월일 : 2025. 10. 14.

발 의 자 : 오세희 · 허성무 · 장철민
윤종균 · 이훈기 · 김우영
이재강 · 이언주 · 이재관
민병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액화석유가스(이하 “LPG”라고 함)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 등에서 주거용 및 상업용 에너지원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음. 그러나 최근 도시가스 및 LPG 배관망 확대에 따라 LPG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현행 법령은 LPG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대상을 한국가스안전공사로 한정하고 있으나, 관 주도의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LPG 산업현장에서는 민간 자율적 참여를 통한 보다 효율적이고 현장 밀착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음.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추진중인 LPG 배관망 사업은 세대당 과도한 시공비로 인해 효율성이 낮아, 많은 지자체가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자체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사업자단체를 안전관리 및 보급지원 기관에 포함시켜, 현장 중심의 유통구조 개선과 안전관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비용 절감과 안전관리 수준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전단 중 “한국가스안전공사”를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사업자단체”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한국가스안전공사”를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사업자단체”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대통령령”을 “사업자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6조(안전 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 ① (생 략) ② 산업통상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u>한국가스안전공사</u> 로 하여금 안전관리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u>한국가스안전공사</u> 에 대하여 안전관리 조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6조(안전 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한국가스안전공사</u> <u>또는 사업자단체</u> ----- ----- ----- ----- <u>한국가스안전공사</u> 또는 <u>사업자단체</u> ----- ----- -----.
제47조(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 사업 및 안전관리 체계 조성의 지원) ① (생 략) ② 산업통상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u>대통령령</u>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관	제47조(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 사업 및 안전관리 체계 조성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사업자단체</u> 또 <u>는 대통령령</u> -----

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